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1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2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2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서민우 의원 등 8명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검토기간: 2024. 2. 5.(월) ~ 2. 8.(목)

2. 개정이유

- 달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달서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「민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단 운영의 타당성을 제고하고,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함(안 제6조)
- 나.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함(안 제8조)
- 다. 세입·세출 결산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함(안 제15조)
- 라. 재단의 정보공개 등을 규정함(안 제17조2)

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가 출자한 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, 결산서 제출,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에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공고의 방법을 두고 있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,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 것을 부구청장이 대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
- 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
- 조례 제7조(임원)은 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으로 보이며,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출자·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직위로 보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부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
-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상임이사가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이사회 이사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어 개정취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17조의2는 법 제32조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

○ 살펴보면, 법 제32조제1항은 공시 내용을 명시하여 공시하도록 할 뿐 공시하지 않을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 제17조의2 각 호의 내용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수정의견

안 제17조의2 각호를 제외한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다만,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7조의2(정보공개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비공개</u>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<u>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는다.</p> <p>1. ~ 10. <생략></p>	<p>제17조의2(정보공개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~ 10. <개정안과 같음></p>

관계법령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

제21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·운영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 범위

2. 재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
2.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
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
4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
5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
6.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

7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5.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
6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7.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10. 예산과 회계
11. 정관의 변경
12. 해산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32조(경영공시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(이하 “경영공시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2. 전년도 결산서
3.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
4.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
6.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
7.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·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
8. 자본금,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